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9. 4. 22.

교육사회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최재욱 의원 외 7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4월 15일

○ 회부일자 : 2009년 4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4. 20 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최재욱 의원)

가. 제안이유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 업무를 체계화  
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통합센터의 명칭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 함(안 제3조)
- 기능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활동·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4조)
- 센터에는 원장과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을 둠(안 제5조)
- 센터의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음(안 제 8조)
-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함.(안 제16조)
  - ※ 조례안 : 5장 21조 부칙1조로 구성

##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가. 제정 동기

-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써
-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 업무를 체계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나. 현재 운영 실태

- 충청북도에서는 상담지원센터는 1991년, 활동진흥센터는 1997년에 설치하여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 2008년 1월부터 상담지원센터소장이 활동진흥센터소장을 겸직근무토록 하고 있음

※ 타 시도 : 통합 6개소(법인운영), 미통합 9개소(단체위탁)

#### 다. 검토결과

- 동 조례안은 센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 업무를 연계한 통합관리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 향후 관련단체 위탁 또는 법인설립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 VI.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며,

- 이를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조례 시행 후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내용

-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

##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9. 4. 20.

제안자 : 이종호 의원 외

###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며,
- 이를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조례 시행 후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함.

### 수정주요내용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lt;신 설&gt;</u></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u></p> <p><u>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u></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관할 지역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조직과 기능**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원장(이하 “원



장” 이라 한다)과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을 둔다.

② 센터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에 팀을 설치하며,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원장의 임무) 원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업무총괄과 유관기관 연계 협력
2. 인사와 복무관리
3. 예산·회계관리의 집행과 결산
4. 시설물 관리와 화재예방, 도난방지
5.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3장 인사

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실장, 팀장, 팀원, 행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용)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이하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원장, 직원의 자격기준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력산정기준) 직원의 경력산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상의 경력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제10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1조(직무대행과 팀장의 겸직) ① 센터의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지상담실장, 활동진흥실장 순으로 대행한다.

②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의 실장은 소속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제4장 복무

제12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보수지급 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과 예산·회계,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5조(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제반 상담내용과 보호요청에 대하여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과 보호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장 재무

제16조(재정수입) 센터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재산과 회계관리) 재산과 회계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실적) 원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연도 사업실적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 (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 타 시도 운영현황

(2009. 3월 현재)

구분	통합 여부	운영실태		운 영 단 체	
		위탁	직영	활동진흥센터	상담지원센터
서울		○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육성회
부산		○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부산연맹
대구	○ (법인)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08. 1)	
인천		○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성산효대학재단
광주		○		광주홍사단	YMCA
울산		○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YWCA
대전		○		대전불교청소년연합회	기독교연합봉사회
강원		○		천주교재단	살레시오재단
경기		○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대건청소년회
충북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충남	○ (법인)			(재)청소년육성센터('08. 3)	
전북		○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상동청소년회
전남	○ (법인)			(재)청소년종합지원본부('09. 1)	
경북	○ (법인)			청소년육성재단('05. 6)	
경남	○ (법인)			(재)청소년종합지원본부('06. 8)	
제주	○ (법인)			성지문화재단('97. 8)	

※ 통합여부 : 통합 6개소(법인운영), 미통합 10개소

운영실태 : 법인운영 6개소, 단체위탁 9개소, 직영 1개소